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수정·보완 요청 근거 마련〉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16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수정·보완 요청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삼석 의원 등 2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Ⅲ. 검토의견

1. 현장실습 안전교육에 대한 사전검토 및 수정·보완 요청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이하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이라 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교육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u>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u>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 ----- ----- <u>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u> (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이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u>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u> 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② ----- <u>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u> ----- -----. ③ <u>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u>

<신 설> <신 설>	<u>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할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u> <u>④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의 실시, 위탁,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및 수정·보완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현행 제9조의5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함)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교육을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현장실습생 수와 산업재해 및 권익침해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대비 2024년 현장실습생이 약 1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건수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어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참여학생, 산업재해 및 권익침해 현황>

연도	현장실습 참여학생(명)	산업재해건수(건)	권익침해건수(건)
2022	19,027	11	22
2023	16,353	13	15
2024	16,542	14	14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교육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내실화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함.

그러나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의무를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위탁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취지에서 벗어나 전문성이 취약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수탁기관의 전문적 교육 설계, 운영의 자율성 및 교육 내용의 연속성 등이 훼손되어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개정안 제9조의5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의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내용에 대한 사전검토가 아니라 “안전사고와 노동인권·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9조의5제5항에 관하여는,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2에서 현장실습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임규정을 둘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 추가적으로 인천교육청은 현장실습 시 안전사고는 교육내용의 미흡이 아닌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고,

대전교육청은 현행법에 따른 안전교육이 충분히 실시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오히려 현장의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강원교육청은 현재 매년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

고 있어 현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울산교육청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업무가 과중되므로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차원에서 사전 검토를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2